

◆ 政府 施策 ◆

中小企業 범위 확대 - 通産部, 調整案 마련 7月 시행 -

오는 7월부터 중소기업의 범위가 대폭 현실화돼 5백여개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포함돼 중소기업관련
의 각종 세제 금융상의 혜택을 받게 되고, 반면에 사실상 대기업의 지배를 받는 1백50여개 중소기업과
자동화가 이루어진 20여개 중소기업은 대기업으로 분류된다.

통상산업부는 중소기업자 범위조정 및 중소기업 관련법을 시행령에 대한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자 범위조정안을 발표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포함되는 기업의 자산총액 기준이 현행 1백20억~6백억원에서 2백억
~8백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또 물류관련 업종,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 60개 업종은 중소기업 상시근로자수 기준이 확대되는 반면
자동화가 이루어진 기성복 제조업, 신발 제조업 등 89개 업종은 상시근로자수 기준이 낮아진다.

이와 함께 상시근로자수와 자산총액기준을 만족해도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이 없는 기업은
중소기업자 범위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연구·기술인력에 대해서는 상시근로자수에서 제외
할 방침이다.

또 앞으로 소기업을 위한 별도의 대책을 강구키로 하고, 이를 위해 소기업의 상시고용인원 기준을
▲제조업·광업·운송업 20인 이하 → 50인이하 ▲건설업 20인이하 → 30인이하 ▲도·소매업 기타
서비스업 5인이하 → 10인 이하로 대폭 현실화 시키기로 했다.

중소기업자 범위조정 내역(전기관련)

1. 상시 근로자수 기준

○ 범위 확대

표준산업분류	해 당 업 종	상시근로자수(명)	
		현 행	개 정 안
31901	내연기관용 전장품 제조업 (자동차용)	300 —	500 (1,000)
31904	차량용 조명 및 전기장치 제조업 (자동차용)	300 —	500 (1,000)

○ 범위 축소

표준산업분류	해 당 업 종	상시근로자수(명)	
		현 행	개 정 안
29226	용접기 제조업	300 (※ 1,000)	300
31102	변압기 제조업	500 (※ 1,000)	500
31103	전자변성기 제조업	300 (※ 1,000)	300
31104	방전관용 안정기 제조업	500 (※ 1,000)	300
31201	배전용 전기회로 개폐, 보호 및 접속장치 제조업	300 (※ 1,000)	300
31202	기기용 전기회로 개폐, 보호 및 접속장치 제조업	500 (※ 1,000)	500
31203	배전반 및 자동제어반 제조업	300 (※ 1,000)	300
31302	가공절연코드 및 코드셋트 제조업	500 (※ 1,000)	300
31401	일차전지 제조업	300 (※ 1,000)	300
31502	조명장치 제조업	300 (※ 1,000)	300
31503	광고용램프 및 유사조명장치	300 (※ 1,000)	300
31902	전기경보 및 신호장치 제조업	300 (※ 1,000)	300
31903	자석 및 자석제품 제조업	300 (※ 1,000)	300
31905	전기용 탄소제품 및 절연체 제조업	300 (※ 1,000)	300
31906	산업용 접시 세척기 제조업	300 (※ 1,000)	300
31909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300 (※ 1,000)	300

(주) ※ 전자부품 및 전자재료류를 제조하는 업종

○기타(부분확대 또는 감소)

표준산업분류	해 당 업 종	상시근로자수(명)	
		현 행	개 정 안
31101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300 (※ 1,000)	500
31109	기타 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300 (※ 1,000)	400
31301	피복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300 (※ 1,000)	500
31402	축전지 제조업	300 (※ 1,000)	700
31501	전구제조업	500 (※ 1,000)	600

(주) ※ 전자부품 및 전자재료류를 제조하는 업종

2. 자산 총액 규모 기준

표준산업분류	해 당 업 종	자산총액규모(억원)	
		현 행	개 정 안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400~600	800
31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400~500	800

高度技術범위 全面조정

- 外國人 투자 · 기술도입 支援대상 -

외국기업이 국내에 진출할 경우 세제 · 금융 · 입지 등 면에서의 특혜가 주어지는 고도기술로 81개 항목 261개 기술(품목)이 지정됐다. 기술도입시 로열티지급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혜택이 주어지는 고도기술 역시 94개항목 288개로 확대됐다. 정부는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환경개선및 첨단고도기술의 도입 촉진을 위해 그동안 추진해 왔던 ‘외국인투자 조세감면대상 고도기술’ 및 ‘기술도입관련 고도기술’의 범위를 전면 개편, 시행키로 했다.

외국인의 투자진출시 수반하는 기술이 고도기술일 경우 혜택이 주어지는 고도기술은 종전 제조업 80개 품목및 서비스 분야 3개 업종등 총 83개가 지정돼 있었으나 지정대상이 기술중심으로 전환돼 261개(일부는 품목)가 지정됐다.

재경원은 기존의 대상분야중 국내관련 산업이 성장단계에 진입한 컴퓨터 및 주변기기등의 기술은 제외하거나 수준을 높였다고 밝혔다.

반면 국내외간 기술격차가 큰 광소재 및 광섬유, 정보처리 및 컴퓨터응용, 농업용 자동화장치, 첨단건축공법등 첨단산업을 포함시키고 부품·소재관련 기술(120개)을 집중 반영했다.

▲ 외국인 투자·기술도입 고도기술

(항목/기술수)

분 야	외국인투자	기술도입
전자·정보·전기	23/79	25/75
정밀기계·신공정	11/36	11/26
재료·소재	10/38	13/55
신물질·생물산업	9/21	10/25
광학·의료기기	4/14	4/14
항공·수송	10/35	10/38
환경·에너지·건설	14/38	21/55
계	81/261	94/288

이에따라 이들 기술을 수반한 외국인 기업이 국내에 진출하면 △ 법인세·소득세의 최초발생년도 부터 5년간 100%감면과 3년간 50%감면, 자본재 도입시 관세·특소세·부가세 면제등 조세지원 △ 해외 단기차입(100%)과 상업차관도입 허용 △外國人 전용공단 우선 분양과 수도권 입주 허용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외국인투자의 조세감면대상 고도기술을

확대한 데 맞춰 기술도입의 고도기술범위도 조정했다.

국내기업에 기술을 제공한 외국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부과를 100% 면제 받을 수 있는 고도 기술은 그간 10개분야 106개 품목으로 돼 있었으나 94개 항목에 288개 기술로 바꿨다.

외국인 투자 고도기술범위 조정안

1. 전자·정보 및 전기분야

현 행	개 정(안)	개 정 사유
특별고압이상의 전기 기기 및 동 부품 (정격 전압 7KV 이상에 한함)	<p><전기부문></p> <p>■ 첨단전기설비 및 열처리기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변전설비(345KV이상) ○ 가스절연 개폐장치(362KV, 63KA 이상에 한함) ○ 초전도 이용기기(초전도 발전기, 변압기, 케이블) ○ 전력변환장치 기술 ○ 불연 전력기기(154KV이상 도시형 변전설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속전철용 전기설비(전력공급설비, 차량 수·배전설비, 진단설비, 신호설비) - 열처리용기기(직류아크식 전기로, 신소재 가공용 전기로, 고주파유도로(300KHz~500KHz), 고주파 인버터식용접기 및 프라즈마절단기, 표면장착 부품납땜 및 절단기, 레이저용접기, 전철용궤도 용접설비, 표면처리식 유도가열장치, 원적외선 가열장치(가열기, 건조기), Microwave, 초음파용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투자관련 고도기술범위 개정(안)과 형평성 유지

현 행	개 정(안)	개 정 사유
전원변환장치	<p>〈전자·전기 부품 및 재료 부문〉</p> <p>■ 고기능 트랜스포머 {로타리트랜스포머, 고주파 (150KHz이상) 트랜스포머, 아몰퍼스 트랜스포머에 한함}</p>	
소형전동기(스테핑 모터 및 서보모터에 한함)	<p>■ 정밀모터(산업용 포함)</p> <p>○ AC 및 DC Servo모터, Stepping모터, 브러쉬레스 DC모터, 전기자동차 및 전철구동 모터, 리니어모터, 고효율전동기, 초음파모터)</p>	
전자세라믹부품 (MLCC, 필터포함)	<p>■ 전자세라믹용 원료 및 부품</p> <p>■ 기타 전자, 전기 핵심부품</p> <p>○ 고성능전지(무공해 고성능 소형 전지에 한함)</p> <p>○ 시스템 보호용 스위치</p> <p>○ 안테나(3GHz 이상)</p> <p>○ 지하결합소자(CCD설계, 제조, CCD 응용 Module)</p> <p>○ 정밀시험, 계측장비의 전용부품</p> <p>○ 제어장치 및 시스템용 전용부품</p> <p>○ SMD 및 칩형 부품</p> <p>○ 전원공급장치(1KW이상)</p> <p>○ 고정밀 스위치 및 콘넥터, 릴레이, 고밀도 수정진동자(VCO, TCXO)</p> <p>○ 초전도 재료(고온 초전도 코일)</p> <p>○ 식별기용 핵심부품(동전메카니즘, 이미지센서를 사용한 광학식 지폐식별 인식기)</p> <p>○ 센서류(특정 변화량을 감지하는 소자로서 감지된 신호를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는 부품)</p> <p>○ 인쇄회로기판(회로간격 0.15mm 이하, Hole 크기 5Φ이하, Flexible PCB, 6층 이상의 PCB)</p>	

2. 재료·소재 분야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신금속	<p><금속재료부문></p> <p>■ 신금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속자성재료(FERRITE, Alnico계, Nd계 소결 및 Bond 자석제외) ○ 도전재료 ○ 유전재료(금속박막중착 기술) ○ 절연재료(폴리머 콘크리트 절연물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투자관련 고도기술 범위 개정(안)과 형평성 유지
직류아아크 용해기술	<p>■ 신제련정련기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류아아크 용해기술 ○ 용광로저 출강을 수반한 2차 정련기술 ○ 용융환원 제철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진국들이 기술이전을 기피하는 기술로서 에너지절감, 공해방지, 원가절감등을 통해 국내철강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행 유지

3. 항공·수송분야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디젤 및 전기자동차 부품	<p><자동차 부문></p> <p>■ 전자, 전기 장치 {알터네이터, 스타터, 모터류 (제어용, 지능형 또는 Brushless형일것), 멀티플렉스 와이어 하네스, 전자제어장치(ECU), 전기자동차용 축전지, 전기자동차용 급속축전지, 센서류, 배기가스저감 및 자기진단장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인차량개발등에 대비한 기술도입이 점차 증가 예상
특수전동기(리니어모터)및 부품	<p><철도차량부문></p> <p><삭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투자관련 고도기술범위 개정안과 형평성 유지
고속전철 및 부품	<p>■ 첨단전동차(객차포함)및 부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동차{VVVF(가변전압, 가변주파수) 제어방식} ○ 고속전철 및 동부품(속도 200km/H 이상의 것에 한함) ○ 자기부상열차 및 동부품 	
자기부상열차 및 부품	<p><엘리베이터 부문></p> <p>■ 고속엘리베이터(구동 장치, 속도 제어장치), 리니어엘리베이터, 초고속엘리베이터</p>	
고속엘리베이터(속도 100m/min 이상)및 동부품		

4. 환경·에너지 자원 및 건설분야

현 행	개 정(안)	개 정 사유
<p>대체 에너지 및 발전 대체에너지(대체에너지 개발 촉진법 제2조에 의함)</p> <p>발전설비</p> <p>직류 및 초고압(765kv 급 이상)송전기술 대용량 전력저장기술 전력관련 초전도 기술</p> <p><신설></p>	<p><에너지·자원부문></p> <p>■ 대체 에너지 기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전기술(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소수력, 석탄가스화, 조력, 파력) ○ 신연료 제조기술(바이오알콜, 수소) ○ 열이용기술(태양열 집열기, 태양열난방, 태양열시스템 통합제어장치, 지열, 폐기물 소각열) <p>■ 발전설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력(BOILER, TURBINE GENERATOR) ○ 복합화력{ GAS TURBINE, TURBINE GENERATOR, HRSG (HEAT RECOVERY STEAM GENERATOR)} ○ 수력(PUMP TURBINE, GENERATOR MOTOR, HYDRAULIC TURBINE, GENERATOR) <p>■ 발전기술{동력발전기술, 유동층연소발전기술, MHD(전자유체) 발전기술}</p> <p>■ 송전 및 전력저장 기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류 및 초고압(765kv급 이상) 송전 기술 ○ 대용량전력저장기술 ○ 전력관련초전도 기술 <p><건설부문></p> <p>■ 첨단교통 관련부문 기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물 및 차선감지기술 ○ 초고속 교통정보분석 및 송수신기술 ○ 신호·안전·교통관제 및 경보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체에너지기술은 화석연료 대체로 지구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고도기술로 정부주도하에 지속적인 개발을 추진중(연간 약 60억원 지원) - 현재 국내기술은 선진외국과 비교하여 상당한 기술격차를 보이고있어 기술개발 및 보급의 촉진을 위하여 기술도입 및 외국인 투자가 필요 - 현행(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 제2조에 의함)과 같이 하되 대체에너지기술을 구체적으로 명시

기술도입 고도기술 범위 조정안

1. 전자·정보 및 전기분야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특별고압 이상의 전기 기기 및 동 부품 (정격전압 7KV 이상에 한함)</p>	<p><전기부문> ■ 첨단전기설비 및 열처리기기 ○ 송변전설비(345KV 이상) ○ 초전도 응용기기(초전도 발전기· 변압기· 케이블) ○ 전력변환장치 기술 ○ 고속전철용 전기설비(전력공급설비, 차량 수· 배전 설비, 진단설비, 신호설비) ○ 열처리용기기{직류아크식 전기로, 신소재 가공용 전기로, 고주파 유도로(30KHz~500KHz), 고주파 인버터식 용접기 및 프라즈마 절단기, 표면장착 부품 납땜 및 절단기, 레이저용접기, 전철용궤도 용접설비, 표면처리식 유도가열장치, 원적외선 가열장치(가열기, 건조기), micro wave 건조기, 초음파 응용기기}</p>	<p>○ 현행 7KV이상을 345KV 이상으로 축소 ○ '특별 고압 이상'의 전기기기'라는 포괄적인 내용을 초전도 응용기기, 전력변환장치기술 등으로 한정하여 범용 전기기기는 제외</p>
<p>전원변환장치</p>	<p><전자· 전기부품 및 재료분야> ■ 고기능 트랜스포머{로타리 트랜스포머, 고주파(150KHz 이상) 트랜스포머, 아몰퍼스 트랜스포머에 한함}</p>	<p>○ 일반 트랜스포머 제외</p>
<p>소형전동기(스테핑 모터 및 서보모터에 한함)</p>	<p>■ 정밀모터(산업용 포함) ○ AC, DC 서보 모터 ○ 스테핑 모터 ○ 브러시리스 DC모터 ○ 전기자동차 및 전철구동용 모터 ○ 리니어 모터 ○ 고효율 전동기 ○ 초음파 모터</p>	<p>○ 신기술인 브러시리스 DC모터, 전기자동차 및 전철구동용 모터, 리니어 모터 등 신규 추가</p>
<p>광케이블 및 특수케이블(345KV 이상의 전력용 및 해저용 케이블에 한함)</p>	<p>○ 광섬유 및 광케이블과 그 전용접속부품 ○ 통신케이블 ○ 전력케이블(345KV 이상의 것과 해저용에 한함) ○ 고성능전지(무공해· 고성능· 초소형전지에 한함) ○ 안테나(3GHz 이상) ○ 전하결합소자(CCD 설계· 제조, CCD 응용 module) ○ 정밀시험· 계측장비의 전용부품 ○ 제어장치 및 시스템용 전용부품 ○ SMD 및 칩형 부품 ○ 전원공급장치(1KW 이상) ○ 고정밀 스위치 및 콘택트, 릴레이, 고밀도 수정진동자(VCO, TCXO) ○ 초전도 재료(고온초전도 코일) ○ 자동차용 헤드램프(자동차 전조등)</p>	

현 행	개 정(안)	개 정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별기용 핵심부품(동전 메카니즘, 이미지센서를 사용한 광학식 지폐식별 인식기) ○ 센서류(특정 변화량을 감지하는 소자로서 감지된 신호를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는 부품) ○ 인쇄회로기판(회로간격 0.15mm 이하, hole 크기 5Φ 이하, flexible PCB, 6층 이상의 PCB) 	

2. 재료, 소재 분야

현 행	개 정(안)	개 정 사유
신금속	<p><금속·재료 부문></p> <p>■ 신금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속자성재료(ferrite, alnico계, Nd계 소결 및 bond 자석제외) ○ 도전재료 ○ 유전재료(금속증착박막) ○ 절연재료(플리머 콘크리트 절연물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지향적 개념인 신금속의 범주에서 기개발된 재료·기술은 제외하고 향후 3~4년 이내 개발될 수 있는 재료·기술 나열

3. 항공·수송 분야

현 행	개 정(안)	개 정 사유
디젤 및 전기자동차 부품	<p><자동차 부문></p> <p>■ 전자·전기장치{알테네이터, 스타터, 모터류(제어용 지능형 또는 brushless형일 것), 멀티플렉스와이어 하네스, 전자제어장치(ECU), 전기자동차용 축전지, 전기자동차용 급속충전장치 센서류, 배기가스 저감 및 자기진단장치}</p>	
특수전동기(리니어모터) 및 부품 고속전철 및 부품 자기부상열차 및 부품	<p><삭제></p> <p>■ 철도차량 부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동차{VVVF(가변전압, 가변주파수) 제어방식} ○ 고속전철(최고속도 200km/h 이상의 것에 한함) 및 그 부품 ○ 자기부상열차 및 그 부품 	
고속엘리베이터 및 동부품	<p>■ 고속엘리베이터(구동장치, 속도제어장치), 리니어 엘리베이터, 초고속 엘리베이터</p>	

'95년 상반기 국산 신기술 인정 예정기술 선정

- 과기처, 전기·전자 10개등 42개 선정 -

과학기술처는 올 상반기 국산 신기술인정 예정기술 42개를 선정,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기술은 전기·전자분야 10개, 정보·통신분야 9개, 기계분야 9개, 화학·생물분야 7개, 금속·비금속분야 7개 등 총 42개로 이중 대기업이 20개, 중소기업이 22개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선정된 기술들은 과기처 공고로 관보에 게재되며 이번에 선정된 기술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후 20일 이내에 산업기술진흥협회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과기처는 국산신기술 최종인정 기술들을 4월말 최종확정 발표하고 기술개발업체에 대해 국산신기술인정서 및 KT마크를 수여할 계획이다.

과기처는 올 상반기 국산신기술인정제도에 응모한 기술들을 분석한 결과 지금까지 대기업 중심의 기술개발 활동이 중소기업으로까지 확산돼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성과가 점차 확산되고 있으며 신기술·신제품의 출현 속도가 점차 빨라지고 있다고 밝혔다.

국산신기술인정제도는 국내 기업이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 우수상을 인정해 줌으로써 국산신기술의 기업화를 촉진하고 이 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초기시장 진출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과기처가 93년부터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에 걸쳐 시행하고 있다.

과기처는 올 하반기 국산신기술 인정신청은 6월중순까지 신청서를 접수받아 3차례 전문가의 심사를 거친 후 10월경 인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 95년 상반기 국산신기술 인정예정기술

△ 전기·전자분야

회사명	기술명
낙원전기	예열점등식 전자스타터
보영전자	TRANSFORMER LESS형 소형 경광화 UPS 제조기술
삼성전자	냉기자동 최적토출 제어시스템
"	LNA를 이용한 컬러 TV 수신감도 증폭기술
"	캠코더 줌렌즈 제조기술
"	FULL DIGITAL SERVO 제어방식에 의한 로봇제어 기술
LG전자	비례-적분 위상제어방식에 의한 단상유도전동기의 가변속제어장치
"	캠코더의 광학적 컬러 뷰파인더 기술
진광	선로자동화 개폐기 설계 및 제조기술
청계기전	전동차용 190KVA급 보조전원장치

△ 화학·생물분야

회사명	기술명
LG 전선	산업용 고기능 열수축성 튜브

△ 화학·생물분야

회사명	기술명
LG 전선	초내열 알루미늄합금 전선소재기술

❖ 공업 및 에너지 기술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통상산업부는 공업 및 에너지기술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코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법령안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통상산업부 공고 제 1995-40호, '95. 4. 8) 했다.

1. 제정취지

- 공업 및 에너지기술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또한 동 법률 부칙에 의하여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 및 구조조정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1995년 7월 1일 폐지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구조조정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중 생산기술연구원 및 민간생산기술연구소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을 동법 시행령으로 이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업 및 에너지기술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정(안)

- 기술기반조성계획의 수립과 기술기반조성사업에 있어 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동 사업의 추진에 필수적인 항목으로 기술기반조성계획 및 사업의 세부 내용과 기반조성 수요조사, 협약체결, 출연금의 지급·관리·사용과 평가관리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 기술기반조성사업 중 기술인력의 교육·훈련, 연구시설 등의 확충, 신기술보육지원 사업의 지원, 민간기술지도기관의 기준 및 육성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동 사업의 추진에 필수적인 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 산업정보전산망사업의 추진을 위해 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동 사업의 추진에 필수적인 전담사업자의 지정절차, 전자문서의 범위 및 표준화, 산업정보의 공개, 산업정보의 보안·관리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의 기술지원 권고를 받는 기관으로 한국전력등 통상산업부 산하 8개 기관을 지정하고 동 기관의 기술지원계획 수립절차를 규정함.
- 생산기술연구원 및 민간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수적인 사항과 법률에 의하여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
 - ※ 생산기술연구원 및 민간생산기술연구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구조조정촉진에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규정을 이관한 것임.
-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발전에 관한 전문가의 지식을 최대한 활용하고 그 의견을 들어 기술택의 수립 및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산업기술발전심의회 설치 및 운영근거를 마련함.
- 한국전력공사법에 의거 한국전력이 기술개발에 관한 투자 및 출연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생산기술연구원 및 한국전기공업진흥회를 한국전력공사법시행령 제9조제3항에 제12호 및 제13호로 추가함.

나. 공업 및 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산업정보전산망사업과 관련하여 전담사업자 지정·변경, 전담사업자지정증, 산업정보 공개승인에 필요한 서류 및 서식을 정함.
- 민간기술지도기관 지정과 관련하여 민간기술지도기관 지정, 취소등에 필요한 서류 및 서식을 정함.
- 생산기술연구원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신청서류 및 서식을 정함.
 - ※ 자세한 사항은 통상산업부 산업기술기획과(504-4149)로 문의